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만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3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

발 의 자: 유만희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영철, 김원중,
김재진, 김종길, 김태수,
김형재, 남궁역, 남창진,
민병주, 박 석, 박중화,
박춘선, 서상열, 신복자,
유정인, 윤기섭, 이봉준,
이상욱, 이성배, 이종환,
정준호, 채수지, 최민규,
허 훈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27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심각한 육상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한강 수상 교통수단인 한강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「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」에서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명확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.
- 이에 대중교통으로서 한강버스 운영의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대중 교통수단 선택권을 보장하며, 수상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강버스 및 선착장 시설과 관련한 근거조항을 마련 하고자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'대중교통수단'에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을 명시함.(제2조제2호라목 신설)
- 나. '대중교통수시설'에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선장을 명시함.(제2조제3호마목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
도선

제2조제3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선장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대중교통수단”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다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라. (생략)</p> <p>3. “대중교통시설”이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라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마. (생략)</p> <p>4. ~ 7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라. 「<u>유선 및 도선 사업법</u>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 업에 사용되는 도선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마. (현행 라목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마. 「<u>유선 및 도선 사업법</u>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선장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바. (현행 마목과 같음)</p> <p>4. ~ 7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(정의)제2호라목에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을 신설하고, 제2조제3호마목에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조제3항에 따른 유·도선장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주병준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2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